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45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노종면・위성곤・박정현

양부남 • 이수진 • 민병덕

김태선 • 이원택 • 이훈기

박상혁 • 김 현 • 김기표

김성환 · 이용선 · 조승래

박선원 • 백승아 • 소병훈

박균택 • 이기헌 • 윤종군

민홍철 · 추미애 · 서미화

염태영 · 김문수 · 장종태

모경종 • 문금주 • 강득구

이병진 • 김동아 • 허종식

허성무 · 남인순 · 전현희

이광희·박 정·이성유

정동영 • 이상식 • 신정훈

채현일 · 이해식 의원

(44인)

제안이유

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,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.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 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, 주민 실 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.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.

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,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.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·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,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,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지방자기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).
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 품권을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 제2항).
- 라.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함(안 제15조제4항 신설).
- 마.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 율을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제5항 신설).
- 바.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5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· 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

-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15조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"를 "지역사랑상품권의"로,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할인하여"를 "제5항에 따른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.
 - ⑤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에 따

른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(이하 "기준 할인율"이라 한다)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기준 할인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.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과 제5항에 따른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반영된 금액은 「국가재정법」 제29 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상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5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	제3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	기본계획 등)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관한 사항 2.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관한사항 3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유통 및 이용실태에관한사항 4.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(이하

-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・법 인・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고,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
-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<u>할인하여</u> 판매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® z] 방자치단치	테는 지역	 부사랑상
품권	활성화를	위하여	필요한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-----

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----<u>지역사랑상품권의</u>---

하여야 한다.

정한다

2 -----

-----<u>제5항에 따른 기준</u> 할인율보다 할인하여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한다.

 ⑤
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

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

<신 설>

<신 설>

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(이하 "기 준 할인율"이라 한다)을 정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 이때 기준 할인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.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 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 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신청 내용과 제5항에 따른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야 한다. ⑦ 제6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반영된 금액은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 별 지출한도 상정 시 포함하지

아니하다.